

제19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8.2.9.(서면심의)

- 안건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외 1개소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19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조사업무에서 자료수집은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유사사례 자료수집”으로 변경 할 것
- 설계기준에 “민감도분석에 의거 사업비증액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지는 사업비(이하 한계사업비라한다)를 제시하여 추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사업비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한다”를 추가 반영 할 것
- 예정공정표에서 중간보고 → 1차 자문 → 2차 자문 순서로 되어 있으나 중간보고 이전에 1차 자문을 통해 각종 계획 및 타당성검토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정을 변경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항목에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공공측량 계획”을 추가할 것
- 하도급 사항에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본 검토서는 2018.2.7.(수) 18: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외 1개소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도로	<p>1. 제1장 총칙 제2절 과업의목적(P1) 1) 광운대역~월계로(생략) 연결에 대한 기본구상을 토대로 경제적 타당성, 투자우선순위평가, 재무적타당성, 기술적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으로 변경 검토 요망 합니다 2) 봉화산길 확장은 (생략) 기본구상을 토대로 (위 1호와 같음) 제4절 일반사항</p> <p>2. 착수신고서및 기타제출서류에서~(P3) 1.4.10 과업내용변경(P8) 1.6.1 특기사항 5번항(P12)의 행정자치부예규를 행정안전부예규로 수정바람 6) 계약상대자는(생략)(P4) 동법시행규칙제23조(별지25호서식)을 제27조(별지27조 서식)으로 수정검토바랍니다.</p> <p>4. 업무협의및공정보고(P4) 2) 월간공정보고(필요시)로 수정검토바람.</p> <p>제2장 조사업무 제1절 일반사항 (,P15) 2.1.3 자료수집 도로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유사사례 및 분석대상 사업계획 관련 자료수집을 삭제하고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유사사례 자료수집으로 변경적용검토 바람. 제5절 설계기준 및 기타(P19) 3.5.5 민감도분석에 의거 사업비증액에 따라 경제적타당성이 없어지는 사업비 (이하 한계사업비라한다)를 제시하여 추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사업비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한다. 를 추가반영 검토바람.</p>	

분야	검토의견	비고
도로	<p>제6절 노선및구조물설계 3.6.2. 구조물설계(P20) 1. 신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3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으로 수정바람)</p> <p>제4장 성과품작성 제1절 일반사항 4.1.1 성과품 작성기준(P2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과 「건설기술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2012)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과 「건설기술공사의 설계도서작성기준(국토교통부2015)로 수정검토바람.</p> <p>제2절 성과품의 구성및내용(P21) 4.2.1종합보고서작성을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으로 수정바람 제3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4.3.1 최종성과품(P22) 납품목록 1. 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량 10부 2. 타당성조사 보고서 별책부록10부(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추정수량 및 추정공사비 산출서등) 3.설계도면 : 1)위치도(축척:1/25,000이하) 2)노선도(축척:1/1000~1/5000) 3)종평면도(축척:1/1000~1/5000) 10부 4.CD-ROM1식 : 3식 5.현장조사 사진첩 : 1식 6.기타 관련자료 : 1식 으로 변경검토 요망합니다.</p>	

2018년 2월 2일

심의위원 : 정 상 민



본 검토서는 2018.2.7.(수) 18: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외 1개소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교통	적절하게 작성되었음.	
종합의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8년 2월 1일

심의위원 : 이수범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외 1개소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토목구조	1. 예정공정표의 일정중 1차 자문 이후 바로 2차 자문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1차 자문을 중간보고 이전에 시행해서 각종 계획 및 타당성 검토 내용의 검증을 해본 이후 중간보고를 통해서 정책적 검증이 이루어 지는 것을 추천함.	2쪽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착수후 10일 이내 제출 토록되어 있음. 용역 계약 이후 착수서류를 준비해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용역 착수가 되므로 “착수일”인지 “계약일”인지 확인이 필요함.	3쪽
	3. 2.1.3 자료수집 항목에 “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유사 사례 및 분석대상 사업계획 관련 자료 수집”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본 과업의 목적 부분에 지하화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는데 오기된 내용인지? 아니라면 본 과업 추진목적에 도로의 지하화 관련 내용을 언급해야 할 것임.	15쪽
	4. 최종 성과품 항목에 원도(A0 사이즈를 말함) 2부가 있음. 과거 청사진 원도가 주를 이룰 경우에 납품목록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일반적으로 원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확인 바람.(발주기관에서 보관도 어렵고 현장에서 도 거의 사용하지 않음)	22쪽
종합의견	<u>조건부채택</u>	

2018년 2월 7일

심의위원 : 원종진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의 1개소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토질 및 기초	<p>1. 제4절 일반사항 4)항 3쪽 4)기타 감독원의~ → 4)기타 용역감독자의~</p> <p>2. 제4절 일반사항 2.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3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서울시 설계용역관리편람 공통편, 제10장)</p> <p>3. 제4절 일반사항 2.항 3쪽 1)착수보고서 → 1)착수신고서 -착수보고서(기본설계~ → -착수신고서(기본설계~</p> <p>4. 제4절 일반사항 3.과업수행계획서 4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 ~계약체결후 14일 이내에~ (서울시 설계용역관리편람 공통편, 제10장)</p> <p>5. 1.4.3. 용역감독 등 2.용역점검 6쪽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p> <p>6. 1.4.5. 설계자문 1)초기단계 6쪽 ~자료수집 완료, 교차로 개선(안) 검토후 → ~자료수집 완료후</p>	

	<p>2) 중간단계: 적정 개선(안)에 대한~ → 2) 중간단계: 적정 검토(안)에 대한~</p> <p>7. 1.4.7. 보안 및 비밀유지 2.항 7쪽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p> <p>8. 1.4.9. 하도급사항 6.항 8쪽 ~허가등을 보유한자 → ~허가등을 보유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p> <p>9.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5.2항 10쪽 → 국가 건설기준 통합코드(국토교통부) 추가</p> <p>10. 제4장 성과품 작성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2.항 21쪽 *총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 →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기준금액 검토 요망)</p>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8년 2월 6 일

심의위원 : 오 해 진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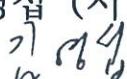
본 검토서는 2018.2.7.(수) 18:00까지 e-mail(allohasy@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외 1개소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토목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4Page 3. 과업수행계획서에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추가- 4Page 2) 월간공정보고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 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 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참여기술자 현황,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3.4 과업기간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1)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8년 2월 7 일

심의위원 : 김영섭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외 1개소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심의

분야	검토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항목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p3)<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공공측량 계획○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 2018. 1.10.)”으로 수정할 것 (p3, p8, p12)○ 1.4.9 하도급사항에서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 내용으로 할 것 (p7)<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1.4.9 하도급 사항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할 것 (p8)<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을 참조하여 제4절 일반사항에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및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 방법”을 추가할 것 (p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장 제2절 4.2.1 보고서 작성은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 내용 및 형식에 따라 구성할 것 (p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구성은 “제출문, 참여기술자, 목차, 위치도, 과업의개요, 조사, 계획, 노선대 검토, 추정사업비 산출, 결론 및 종합, 부록, 별책부록(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추정수량 및 추정공사비 산출서), 설계도면”의 순서로 할 것 - 조사항목에 “유사사례 도로의 교통사고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 ○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 제6조(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자료수집 및 관리)제1조제1호에 따른 사후평가표 “별표1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을 성과품에 제출하도록 할 것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8년 2월 7일

심의위원 : 김홍길 (서명)